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64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현대자산운용㈜

2. 조치내용

○ 과태료 70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)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위반

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은행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 등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○ 현대자산운용은 20xx.x.x.~20xx.x.xx. 기간 중 ㉮ 등 3개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금융기관인 A 정기예금에 집합투자재산을 예치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

2)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한도 위반

1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는 경우 동일인이 발행한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채무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%를 초과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○ 현대자산운용은 20xx.x.xx. ㉮ 및 ㉯에 B법인이 발행한 A2+ 등급 유동화전자단기사채를 각각 ○원, ○원 편입함으로써 자산총액(각각 ○원, ○원)의 2%(각각 ○원, ○원)를 각각 ○원(□%p), ○원(□%p)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

2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는 경우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도록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○ 현대자산운용은 20xx.xx.xx. ~ 20xx.xx.xx. 기간 중 ㉰에 C은행이 발행한 은행채와 C은행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기업어음(D법인 등)을 합산하여 ○원 편입함으로써 자산총액(xx,xxx억원)의 10%(○원)를 ○원(□%p)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

3)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위반

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○ 현대자산운용은 ㉱, ㉲, ㉳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 등을 위반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

(1) (㉱)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여야 함에도, 20xx.x.x. ~ 20xx.xx.xx. 기간 중 총 □일에 걸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였음

(2) (㉲)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특정 주식의 투자 비중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하여야 함에도, 20xx.x.xx. ~20xx.x.xx. 기간 중 총 □일에 걸쳐 자산총액의 90% 미만으로 동 주식에 투자하였음

(3) (㉳)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의 범위에서 증권을 대여할 수 있음에도 20xx.x.x.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을 초과(위반비율 x.xx%p)하여 대여하였음

나. 근거법규

1)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위반

□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5조 제8호
□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7조 제4항 제8호의2

2)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한도 위반

□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5조 제8호
□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7조 제4항 제8호의2

3)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위반

□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5조 제8호
□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7조 제4항 제1호